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63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국민연금 안부확인 등기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우정사업본부장

‘국민연금 안부확인 등기우편서비스’ 시험적 실시

1. 개요

국민연금 수급자의 안부확인과 연금지급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국민연금 안부확인 등기우편서비스(맞춤형 계약등기)”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예외 적용

2. 주요내용

가. 접수절차 : 우체국 창구접수

나. 배달취급 : 본인확인, 회신우편, 선택등기 취급

다. 요금체계 : 5,500원(단일요금 적용)

부 칙

이 공고는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